



명예교수 임용 규정

규정번호	2-3-20
제정일자	2001. 3. 1.
개정일자	2024.3.20.
책임부서/팀·계	교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 대학 명예교수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자격) 명예교수 추대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본 대학의 전임교원으로 3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재직 중 본 대학 발전에 기여하고 교육·학술·취업·산학분야의 업적이 뚜렷하고, 퇴직 2년 이내인 자 <2024.2.28. 개정>
2. 본 대학에서 전임교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 본 대학 발전에 기여하고 교육·학술·취업·산학분야의 업적이 뚜렷하고, 퇴직 2년 이내인 자를 소속 학과 교수 전원 연명(連名)으로 추대된 자로서 총장이 특별히 추대하는 자 <2024.2.28. 개정>
3. 본 대학 총장을 역임한 자

제3조(임용절차) 명예교수 추대 및 임용절차는 명예교수추천서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 또는 위촉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. <2024.2.28. 개정>

제4조(구비서류) 명예교수를 추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본 규정 제2조 3항에 의거 추대하는 자는 제외한다.

1. 명예교수 신청서 <2024.2.28. 개정>
2. 교육 학술활동 및 본 대학 발전에 기여한 공적서 <2024.2.28. 개정>
3. 명예교수 추천서 <2021.8.20., 2023.3.30., 2024.2.28. 개정>
4. 기타 추대에 필요한 서류

제5조(위원회 심의) 교원인사위원회는 명예교수 추대 후보자의 연구실적 및 본 대학에 기여도를 심의하여 재직의원 2/3 이상의 찬성을 득한 후보자를 총장에게 추천한다.

제6조(강의) 명예교수임용 후 최초 2년간에 한하여 주당 1과목(8시간) 이내의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.

제7조(처우) 명예교수가 담당한 강의의 강사료는 시간당 50,000원을 지급한다. <2024.2.28. 개정>

제8조(임용기간 및 적용) 명예교수의 임용기간은 임용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, 2회 연임 가능하고 (총3년), 본 대학에서만 적용한다. <2024.2.28. 개정>

제9조(세부사항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의 제2조(자격), 제3조(임용절차), 제4조(구비서류), 제7조(처우), 제8조(임용

기간 및 적용)은 202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